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송아량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2778호

다. 제출일자 : 2021. 10. 14.

라. 회부일자 : 2021. 10. 20.

2. 제안사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서울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부설 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하되, 최대 설치면수는 10

면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공영주차장 및 시·구·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 설치면수 제한 규정은 삭제하여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여 탈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및 서울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증가시키고, 최대 설치면수를 10면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5조의3)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25. ~ 2021. 11. 01.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원안 동의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상위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21.4.16.개정) 개정 내용을 취지를 감안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이상으로 확대(최대 설치면수 10면 제한규정 삭제)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 동의함

1) 주차계획과-12035(21.10.28.)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시·자치구 소속기관 부설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 구획 설치기준을 상향하고 최대 설치 면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²⁾는 「주차장법」(이하 “법”) 제6조제1항³⁾을 근거로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등의 청사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한다.

3)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획 설치기준을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최대 설치 면수를 10면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 인프라를 향상 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중앙정부의 그린 뉴딜, 서울시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등 관련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과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 확보 기준 등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4)에서는 노외주차장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하도록 개정된 바 있으며 법 제6조제2항5)에서는 특별시 등은

-
- 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5)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실태에 따라 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을 포함한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법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 구획을 상향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대상 차를 현행 ‘전기자동차’에서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⁶⁾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⁷⁾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너비를 기존 2.3 미터에서 2.5 미터로 바꾸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 환경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포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확보 기준 등을 상향하는 것은 다가오는 친환경 교통체계의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7)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이며 향후 조례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시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 편의 증진 방안이 정책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